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64

발의연월일: 2020. 9. 2.

발 의 자: 송옥주·장철민·민병덕

안호영 · 오영환 · 인재근

박홍근 • 이광재 • 유미향

아뉴진비 · 우원식 · 기동민

용혜인 • 양정숙 • 맹성규

남인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"직장 내괴롭힘"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,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사용자로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, 사용자 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.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,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 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, 피해 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 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 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 조). 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2항 중 "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"를 "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"로 한다.

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제2호 중 "제74조제7항"을 "제74조제7항, 제76조의3제2항·제4항·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사용자(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(생 략) 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|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 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다. 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6조(과태료) <신 설> 제116조(과태료) ① 사용자(사용자 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① (생략)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. -----

제7항, 제91조, 제93조, 제98 조제7항, 제76조의3제2항ㆍ제

제74

2조, 제48조, 제66조, <u>제74조</u>

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	<u>4항ㆍ제5항</u>
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과태료는 대	③ 제1항 및 제2항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・징수	
한다.	